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025. 11.

행 정 국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목적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림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요

- 사업기간 : 2025. 7. ~ 2025. 12.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서울시민
- 총사업비 : 2,263,285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금 액	2,263,285	1,697,464	339,493	226,328
비 율	100%	75%	15%	10%

□ 간주처리 사유 및 내역

- 전 국가적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3차 교부한 국비에 대한 간주처리 필요
- 간주처리 내역 : 25,586,925천원 ('25.10.28. 교부 통지 / 11.17. 간주처리 예정)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부담기관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주관부서
보조금 (국고보조금)	1,671,876,750	1,697,463,675	행정안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2,014,793,900	2,040,262,550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도체 경상보조금	7,082,850	7,201,125	

※ 사업명 : (정책)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단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세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붙임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세부 내역 1부.
2.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근거 서류 1부.

불임 1**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세부 내역****○ 제4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1,671,876,750	25,586,925	1,697,463,675

- 세출예산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소 계			
시·자치구 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1,671,876,750) 2,021,876,750	(×25,586,925) 25,586,925	(×1,697,463,675) 2,047,463,675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08-01)	(×5,882,850) 7,082,850	(×118,275) 118,275	(×6,001,125) 7,201,125	

붙임 2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근거 서류

○ 간주처리 근거 서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3차 교부 결정 통지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3차 교부 결정 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3차)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관), 인천광역시장(민생담당관), 광주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일자리경제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경제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장(경제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경제기업과장), 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과장), 경상남도지사(경제기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최범규

서기관

대결 2025. 10. 28. 재정정책과

조석훈

장

전결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6021

(2025. 10. 28.)

접수 자치행정과-15666

(2025. 10. 28.)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www.mois.go.kr

전화

044-205-6067

/전송

044-205-8750

/ chlqjarb00@mail.go.kr

/ 비공개

- (붙임)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3차]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의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 보조사업자 : 17개 시·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5. 7 ~ 12월

○ 사업규모 : 국비 121,605억원

○ 보조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서울 75%, 그 외 지자체 90%)

○ 사업내용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교부목적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사업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10 일반·지방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300 지방재정경제	1350 긴급재정지원	301 민생회복 소비쿠폰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교부총액	1차 교부액	2차 교부액	금회(3차) 교부액	소비쿠폰	부대비용
총계	12,120,122,601	8,060,439,126	3,540,507,840	519,175,635	517,726,530	1,449,105
서울	1,697,463,675	1,123,078,350	548,798,400	25,586,925	25,468,650	118,275
부산	852,291,342	581,063,472	231,399,270	39,828,600	39,720,420	108,180
대구	616,909,698	420,008,598	168,434,550	28,466,550	28,389,330	77,220
인천	716,619,240	458,837,910	217,836,270	39,945,060	39,842,730	102,330
광주	367,959,330	250,266,510	100,244,700	17,448,120	17,401,050	47,070
대전	371,375,730	251,985,690	102,763,080	16,626,960	16,581,150	45,810
울산	277,222,770	188,597,520	78,443,190	10,182,060	10,152,000	30,060
세종	97,310,142	65,323,692	27,921,690	4,064,760	4,053,330	11,430
경기	3,081,332,772	1,973,023,002	978,918,210	129,391,560	129,027,960	363,600
강원	403,614,396	274,362,606	107,894,430	21,357,360	21,301,740	55,620
충북	419,201,532	284,227,632	114,118,650	20,855,250	20,799,990	55,260
충남	563,508,000	382,506,480	153,411,390	27,590,130	27,516,510	73,620
전북	470,777,508	321,890,418	123,834,960	25,052,130	24,987,060	65,070
전남	483,026,994	330,097,824	127,911,510	25,017,660	24,952,140	65,520
경북	678,213,414	462,309,714	180,421,470	35,482,230	35,389,440	92,790
경남	851,006,736	576,047,646	230,463,990	44,495,100	44,379,180	115,920
제주	172,289,322	116,812,062	47,692,080	7,785,180	7,763,850	21,330

- ※ 소비쿠폰 비용과 부대비용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상호 융통 불가
※ 부대비용(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료, 흥보비)은 부대비용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상호 활용 가능
(단, 인건비는 읍면동별 보조인력 1명이상 반드시 채용 후 활용 가능)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①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교부 신청서 상 자부담액을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6.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7.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사업자(자치단체)의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당해 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 함

②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가.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가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가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다.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기타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4]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